#### 2020년 핀테크 정책설명회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020. 1. 16.

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취지

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해외 입법례를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



## [참고 1] 해외 금융 데이터 정책의 방향

전 세계는 **금융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확대**하여 금융산업의 경쟁·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

#### EU



"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익명·가명 정보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마련"

신용정보법 개정안 작업시 EU GDPR을 참고하여 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

#### BIS, FSB





"경쟁우위를 보유한 Big Tech의 금융업 진출은 Fintech에 비해 기존 금융회사에 더 큰 위협이며,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도 위험"

Big Tech 등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추구

## 英 재무부 (TM Treasury)





"디지털 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, 경쟁과 혁신을 촉진 할 수 있는 전담 규제기관인 'Digital Markets Unit'이 필요"

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경쟁법 규제 마련을 권고하고 데이터 개방을 촉진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추진경과

현재 **신용정보법 개정안**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, 금융위원회는 업계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**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**할 계획

####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 국회 법사위 국회 본회의 법공포 (18.11.15.) (19.11.28.) (20.1.9.)(20.1.9.)• 국무회의에서 법 공포 • 김병욱 의원 • 법안1소위 통과 • 전체회의 통과 • 본회의 통과 개정안 발의 (19.11.29.) • 법 공포 이후 \* 추경호 의원 발의 ('16.6월), 박선숙 • 전체회의 통과 6개월 후 시행 의원 발의('16.12월), 송희경 의원 발의 (17.7월) 데이터 3법(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, 다음주 국무회의 예정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① :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 명확화

가명정보 개념의 도입, 활용범위 명확화, 데이터 결합 지원 등 **빅데이터 분석·이용의 법적근거를 마련**하여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

####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

- ✓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'가명정보'의 개념 도입
  - ※ 가명정보 :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

#### 데이터 결합 지원

- ✓ 데이터 결합의 **법적 근거를 마련**
- ✓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 허용

#### 빅데이터 활용범위 명확화

- ✓ 가명정보: ① 통계작성 (상업적 목적 포함)
  - ② 학술연구 (산업적 연구 포함)
  - ③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
- ✓ 익명정보: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

#### 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 마련



- ✓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, 가명정보 처리 중지 및 삭제 의무화
- ✓ 고의적 재식별의 경우,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②: 신용정보산업 규제체계 정비

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**비금융정보 전문CB, 개인사업자 CB, 마이데이터 산업** 등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Players의 출현을 위한 신용정보산업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**데이터 新산업을 육성** 





## [참고 2]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: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

금융 데이터의 개방-유통-결합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촉진

####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(신용정보원)

✓ 신용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분석 데이터와 분석환경을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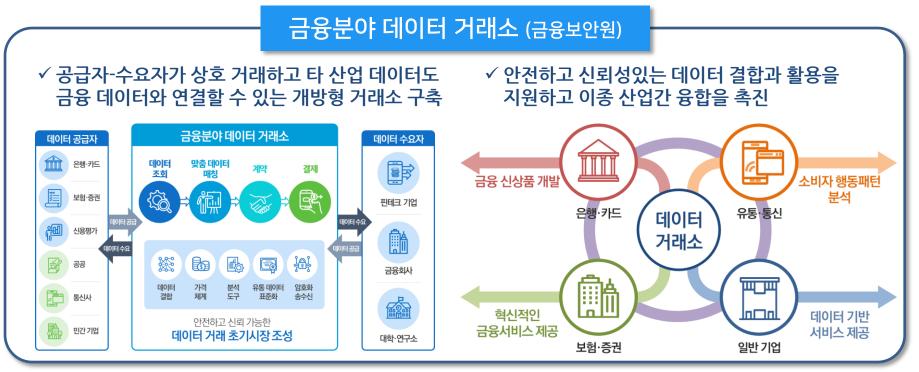


✓ 신용정보DB는 표본DB, 교육용DB, 맞춤형DB 등 활용목적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공 예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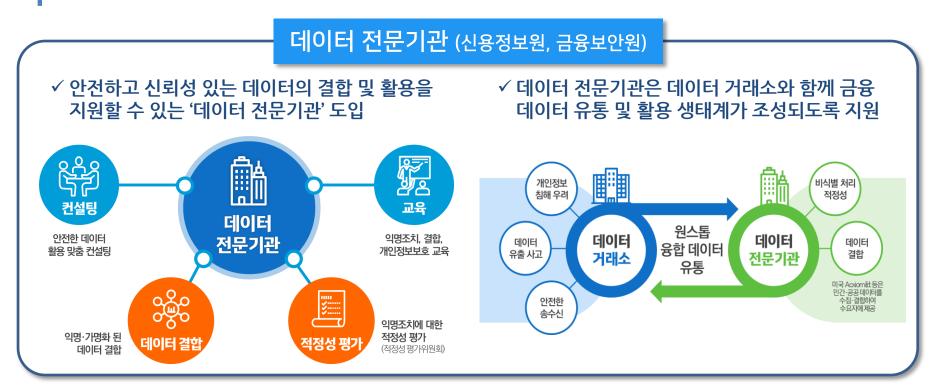
## [참고 2]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: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

금융 데이터의 개방-유통-결합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촉진



## [참고 2]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: 데이터 전문기관

금융 데이터의 개방-유통-결합을 지원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경쟁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촉진

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③ : 금융분야 마이데이터(MyData) 산업 도입

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,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, 금융상품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**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** 도입



은행(계좌정보), 카드회사(결제정보), 보험회사(납부정보) 등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통합 분석이 가능

## [참고 3]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범위 및 허가 관련

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법에 명시된 고유업무와 부수·겸영업무가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심사 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입규제를 설계

#### MyData 사업자의 업무범위

고유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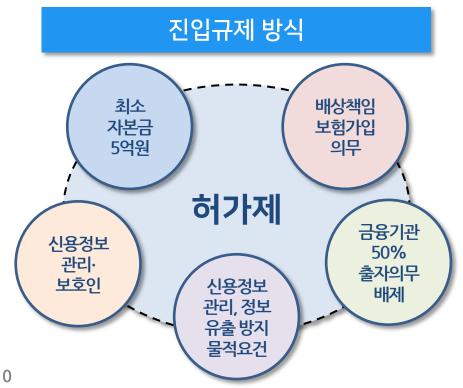
•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

부수업무

- 정보계좌 서비스 (개인신용정보 관리계좌 제공)
-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대리행사
- 데이터 분석·컨설팅, 데이터 분석결과의 제3자 제공

겸영업무

-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
- 금융상품자문업



## 신용정보법 개정안 ④: 정보보호 내실화와 정보주체 권리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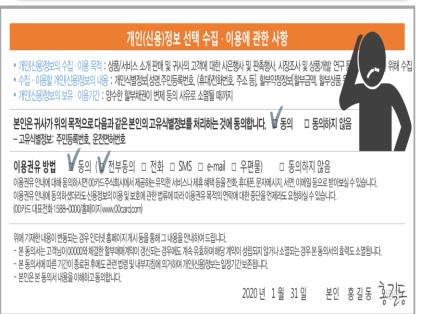
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보호 및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분야 정보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알고하는 동의 • 프로파일링 대응권 • 개인신용정보이동권 • 정보활용동의서를 정보보호 단순화, 시각화 내실화 동의서 등급제 정보보호 강화 • 개별 동의여부 선택이 정보주체 가능하도록개선 권리 강화 •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및 컨설팅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 금융위의 포괄적 조치 명령권 신설 등

11

## [참고 4]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

신용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**정보활용 동의절차를 단순화, 내실화**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혜택 등에 대한 **동의서 평가등급을 산정**하여 제공

####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전



####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후



## [참고 5] 금융데이터 관리 보호 컨설팅 지원

설명회, 컨설팅,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핀테크 기업 등에 금융데이터 관리 보호 컨설팅 지원

#### 설명회 개최

- 중소금융사, 핀테크기업등 대상 설명회 개최
- 정보보호관련규정,지침,사례 등기본지식 설명
- 분기별 1회 개최 (업권,규모특성고려)

#### 찾아가는 컨설팅

- 금융회사, 핀테크기업등 방문 컨설팅 실시
- 수요, 관리수준(상시평가제결과) 등 고려하여 대상 선정
- 사전진단 → 미흡항목확인 → 워인파악 및 개선 방안 제공

####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

- 직급별(실무/책임)· 수준별(일반/전문) 교육 프로그램 운영
- 금융연수원, 금융보안원 등 교육 서비스 인프라 활용
-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제공

금융회사, 핀테크 기업 등의 금융데이터 관리 보호 역량 강화

# 감사합니다!

1~2월 중 신용정보법령의 구체적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, 전문가 간담회,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.